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5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임미애·최기상·신정훈

김용민 • 임오경 • 이병진

송재봉 · 정성호 · 한민수

김용만 • 이재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 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가격 상승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사실상 농가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 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 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나.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마.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 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우대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생산자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로, "하한가격"을 "하한가격과 상한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량 및 예상 수

급상황"을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영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3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제2장에 제9조의3ㆍ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부 관리 농산물의 판매
-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 3. 취약계층 및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

비용 및 수급 상황, 농가경영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품목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해당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 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 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의 고시 주기는 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상 품목 및 농가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 5. 제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의 선정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를 "제9조의3,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생산) ①・② (생 략)	제6조(계약생산)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
	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
	를 위하여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
	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u>한다.</u>
<u><신 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
	<u>할 수 있다.</u>
<u><신 설></u>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u>수 있다.</u>
<u> <신 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 설>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 저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 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위한 한다기를 예시한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 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우대 조치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8조(가격 예시) ①
<u>생산자와 소비자를</u>
<u>하한가격과 상한가</u>
<u>격</u>
②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 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 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 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5. (생략) <신설>

<u>생</u>
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
영상황
③ (현행과 같음)
4
 1 - 2 (처체회 가수)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의3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 • 5. (현행과 같음)
19조의3(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
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 관리 농산물의 판매
9 새사자다체두 저자연자 두

<신 설>

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 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 3. 취약계층 및 소비촉진을 위 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제54조에 따른 농 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 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의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농가경영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품 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을 거쳐 확정한 품목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기에 해당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 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 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

<u>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u> <u>한다.</u>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 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의 고시 주기 는 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

<신 설>

- 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상 품목 및 농가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 5. 제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품목의 선정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 1. (생략)

<u><신 설></u>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2. -----제9조의3,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 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생략) <신 설>

- 3. ~ 5. (생략)
- ③ ~ ⑤ (생 략)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제13조-----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

- 3. ~ 5.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